

## 2023년 디지털금융 법령·제도 변화

종전에 금융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 개별 금융기관과 단일 상품 판매 단위로 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 종합 솔루션 제공 형태로 바뀌고 있고 2023년에는 데이터 기반 디지털 금융 환경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지털 금융과 관련한 법령, 제도는 2023년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한 주요 법령 및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 1. 전자금융

#### (1) 클라우드 이용절차 합리화 및 망분리 규제 완화(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완료. 2023. 1. 1. 시행)

클라우드 이용절차 및 이용업무 중요도 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감독규정에 명시되었고, 비중요업무에 대해서는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업무 연속성 계획, 안전성 확보조치 절차가 완화됩니다. CSP에 대한 평가항목을 간소화되고(141개 → 54개),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SaaS)의 완화된 평가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침해사고대응기관의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클라우드 이용계약 신규 체결, 계약 내용 중 중대사항 변경 등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사후 보고하도록 변경됩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망분리 규제의 경우,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 목적의 경우에는 망분리의 예외가 허용됩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 (2)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추진(전자금융거래법, 감독규정 등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는, 2022. 12.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본 방향은 보안체계를 리스크 기반의 자율보안체계로 전환, 목표·원칙중심으로 규제를 전환하고 세부사항은 가이드라인으로 전환, 사후 책임 강화 등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상반기 중 '금융보안 규율체계 정비 TF'를 구성하여 규제 정비 로드맵, 시행 일정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1단계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현행 보안규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비할 계획인데,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일정규모 이상 전금업자 등의 재해복구 센터 설치의무 신설, 전자금융사고 시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금 가입기준 상향 등이 검토됩니다. 2단계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리스크관리체계 및 보안역량에 따른 표준지침 제시, 제3의 전문기관(금융보안원 등)을 통한 금융회사 등의 자율보안체계 검증 및 지원, 과징금, 손해배상 책임 등 엄격한 사후 책임 규제 도입 등이 검토됩니다.

### (3) 선불업 규제 강화, 후불결제 도입 등(국회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심사)

전자금융거래법을 대폭 개정하는 내용의 '윤관석 의원안(2020. 11. 발의) 및 '김병욱 의원안(2021. 11. 발의)이 제안된 이후에도 여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국회(정무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2022. 11. 22.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6개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으나 의결하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규제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2개 업종 이상 사용 요건 폐지 등), 이용자 예탁금 보호 강화(외부기관 신탁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관련 행위 규칙 마련(가맹점 직계약 체결, 이익제공 한도 등) 및 후불결제(선불 충전금액이 부족한 경우 발행업자의 신용으로 대금을 지급) 업무 도입 등입니다.

국회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시급함을 알고 있어{"이 전금법에 대해서 입법 요구가 현장에서 되게 강합니다. 또 오래됐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향후에도 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4)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추진(선불·직불업 연계 서비스)

금융위원회는 2022. 7.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및 직불지급수단을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인 '금융상품'의 범위에 포함시켜,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감독규정 개정안을 각 입법·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 및 직불지급수단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연계·제휴서비스 규제(설명 의무, 축소변경시 6개월 전 고지 등)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2022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입법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2. 데이터

### (1) 개인사업자 MyData 도입, 기업CB 진입규제 합리화, 데이터전문기관 확대(신용정보법 등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는 2022. 12.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방안 주요 내용은 ① 기업 신용등급제공급의 경우 금융회사 출자자무 폐지를 통한 비정형·비금융 데이터 등을 다량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진입 허용, ② 기술신용평가업의 경우 기술력 평가역량을 보유한 전문기관(예: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의 평가기관)을 허가 신청 가능 사업자로 추가, ③ CB사 업무범위에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④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수집·관리하여 맞춤형 사업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MyData) 도입 검토 등입니다.

CB사 업무범위 확대는 2023년 1분기(신용정보법감독규정 개정), 기업신용등급제공급 및 기술신용평가업 진입규제 개선은 2023년 4분기(신용정보법 및 시행령 개정)를 목표로 하며, 개인사업자 MyData는 2023년 1분기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2)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국회 계류중)

국회 정무위원회는 2022. 12. 5.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현재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3년 중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개정안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처리 전문기관 등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대응 권리(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권, 설명요구권 등)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로펌의 기존 뉴스레터([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초읽기 들어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디지털자산(가상자산)

#### (1)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추진(국회 제정안 심사중)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및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 중입니다. 발의된 법안들은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았다고 볼 수 있는 법안이 비교적 최근에 발의되었습니다(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22. 11.),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윤창현의원 대표발의, 2022. 10.)).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률안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의, 이용자 예치금 보호,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 등 가입 의무화, 디지털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금지, 금융위원회 등의 감독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 법률안 부칙에서는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① 디지털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디지털자산사업자가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② 스테이블 코인(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등을 포함)에 대한 규율체계를 확립하며 디지털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신뢰성있고 합리적으로 디지털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전산시스템(통합시세 및 통합공시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방안, ③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일반적인 영업행위(설명 의무, 명의대여 금지, 유사수신과 방문판매 금지 등) 마련 방안, ④ 은행이 디지털자산 사업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명확인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디지털자산 관련 국회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논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금융위원회 2023년 초 발표 예정)

증권형 토큰은 증권성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으로, 증권의 토큰의 발행과 유통을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로 포섭하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2. 9.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는데,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에는,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율방향, 발행 및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우선적으로 시범 시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3) 가상자산 회계처리 관련 기준 등 정비(금융당국 등이 준비중)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기준은, 가상자산 발행사, 가상자산 보유 기업, 감사인 등 관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금융당국, 회계기준원 등은 2022. 12. 가상자산 회계처리 관련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기준이 마련되고 있으나 공표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그에 앞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주식공시 모범 사례를 배포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공인회계사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 4. 온라인플랫폼 및 P2P

### (1) 온라인플랫폼의 금융상품 판매중개업 시범 운영(2023년 중 시행 예상)

금융위원회는 2022. 8. 금융회사의 플랫폼 업무 활성화 및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예금 및 보험상품 비교·추천 온라인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금상품의 경우 9개 사업자(1개 시중은행, 8개 핀테크기업)가 2022. 1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2023년 2분기 이후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동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 규제, 1사 전속 규제에 대한 특례 등을 부여받은 것으로 향후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상황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 위 방안 발표 당시 2022. 10.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잠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2) P2P업 기관투자자 참여 허용 등영업행위 규제 개선(2023년 중 시행 예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업)은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가 금지 등으로 사업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금융당국은 2022. 12.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P2P업에 대한 광고규제 완화, 기관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기관투자자 참여를 위한 제도 정비, 플랫폼 등을 통한 P2P 상품 비교·추천 등 관련 규제가 정비(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5. 정보통신서비스

### (1) 데이터센터 안전성 확보 관련 개정 법률 시행(2023년 중)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대응하여 데이터센터의 안정성 등을 높이기 위한 법안(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들이 국회를 통과하여 곧 공포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이 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에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대해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트래픽 양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의무 부과 등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정보통신 시설에 대한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은 재난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경우 그 현황, 원인, 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또한 집적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에 대하여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보호조치 수행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 (2)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022. 12. 29.)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CSAP) 개편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어, 각계 의견 수렴 후 2023. 1월 중 공포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국가·공공기관등으로 하여금 시스템을 상(민감정보를 포함하는 시스템) / 중(비공개 업무자료를 운영하는 시스템) / 하(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공개된 공공 데이터를 운영하는 시스템) 등급으로 자체 분류하도록 합니다. 클라우드사업자에 대한 보안인증 평가기준은 등급별로 차등화 하여, 상등급은 보완·강화하고, 중등급은 현행기준을 유지하며, 하등급은 완화됩니다. 특히, 하등급 시스템은 논리적 분리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화우 디지털금융팀은 금융감독원 등 규제 당국과 플랫폼/핀테크 기업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ntacts

### 이주용

T. (+82) 2 6003 7546

파트너변호사

E. [jylee@yoonyang.com](mailto:jylee@yoonyang.com)

### 최용호

T. (+82) 2 6182 8396

파트너변호사

E. [yhchoi@yoonyang.com](mailto:yhchoi@yoonyang.com)

### 주민석

T. (+82) 2 6003 7521

파트너변호사

E. [msjoo@yoonyang.com](mailto:msjoo@yoonyang.com)

### 이광욱

T. (+82) 2 6003 7535

파트너변호사

E. [kwlee@yoonyang.com](mailto:kwlee@yoonyang.com)

### 이근우

T. (+82) 2 6003 7558

파트너변호사

E. [klee@yoonyang.com](mailto:klee@yoonyang.com)

### 이지영

T. (+82) 2 6182 8709

변호사

E. [jyoungl@yoonyang.com](mailto:jyoungl@yoonyang.com)